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영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업종을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로 위임하고, 능률성이 요청되는 실태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(안 제11조의9 제2항 제6호)

- 1)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
- 2)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,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

나.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 (안 제19조제4항)

- 1)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9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이나 산업을 영위하
면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·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과 서
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기업

제19조제4항 중 “법 제26조제4항”을 “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,
법 제2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9(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) ① (생략)	제11조의9(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“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6. 그 밖에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이나 산업을 영위하면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·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는 기업</u>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(생략)	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·③ 삭제	
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(이하 “벤처기업협회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	④ ----- -----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, 법 제26조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삭제	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
〈의안 소관 부서명〉

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	
연락처	(044) 204 - 7704